

성남 도시관리계획(수진동 4781번지 일원
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) 결정(실효)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제2항에 따라 성남 도시관리
계획(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
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
이를 고시하고, 도시관리계획 결정(환원)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02. 19.
성 남 시 장

1. 실효일자 : 2024. 2. 12.
2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실효
※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
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게됨.

3.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	-	수진동 478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	수정구 수진동 4781번지 일원	18,248.0	감) 18,248.0	-	제2019-97호 (2019. 2. 11.)	

4. 도시관리계획결정(환원) 조서
- 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	수진공원	근린공원	수정구 수진동 산41-3 일원	50,600.0	증) 400.0	51,000.0	제1999-751호 (1999.7.10.)	-

5. 지구단위계획 결정(실효)

가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환원)조서

1) 용도지역 ·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·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○ 용도지역 · 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18,248.0	-	18,248.0	100.0	-
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,492.0	증) 9,912.0	11,404.0	62.5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16,321.0	감) 11,139.0	5,182.0	28.4	-
	준주거지역	-	증) 1,227.0	1,227.0	6.7	-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435.0	-	435.0	2.4	-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(가) 공간시설

○ 기반시설(도시공원: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공원	어린이 공원	수정구 수진동 4772번지 일원	1,929.0	감) 1,929.0	-	제2019-97호 (2019. 2. 11.)	-

(나) 교통시설

○ 기반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주차장 (노외지하 주차장)	수정구 수진동 4772번지 일원	1,929.0	감) 1,929.0	-	제2019-97호 (2019. 2. 11.)	-

※ 주차장시설은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으로 조성되며, 중복결정되었던 사항임.

※ 기타, 지구단위계획 결정(실효)는 게재 생략함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는 성남시 고시 제2019-97호(2019. 2. 11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이전으로 환원

※ 도시관리계획 결정(실효)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T.031-729-334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